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9 선고 2018가단52361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담당변호사 강대희

피 고 1. B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변 론 종 결 2021. 5. 25.
판 결 선 고 2021. 6. 2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피고들과 D 사이에 2017. 6. 20. 체결된

매매예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들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7. 6. 23. 접수 제19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갑 제3호증, 을 제1, 10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들이 2017. 6. 20.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조합, 채권최고액 52,000,000원,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,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19. 12. 20.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,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. 2. 8. 이 사건 각 부동산이 G에게 매각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가 말소된 사실, 그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E조합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7,024,607원, 피고 B이 2순위 신청채권자로서 42,791,053원, 피고 C이 2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53,979,552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2021. 3. 18.경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결과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 점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연주

【별지】

부 동 산 목 록

1. 전라북도 정읍시 H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정읍시 I

목조 함석지붕

단층점포

51.57㎡

2. 전라북도 정읍시 H 대 215㎡

3. 전라북도 정읍시 J 대 306㎡

4. 전라북도 정읍시 K 대 106㎡. 끝.